

입안계획서

1. 고시명

- 「간이정액환급률표」
(관세청 고시 제2023-67호 '23.12.29.)

2. 개정사유

- 관세환급특례법 제13조제1항과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
간이정액환급률 재산정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 개정내용

- [별지] 간이정액환급률표
 - 별지 물품의 품목번호(HSK)별 간이정액환급률 재산정 및 신규적용 품목 선정

4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"붙임"

5. 시행 일자 : 2025.1.1.

6. 의견제출 방법

- 제 출 처 :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
- 담 당 자 : 문경환 사무관(042-481-7877)
- 제출기한 : 2024.12. .
- 제출방법 : davidmoonkr@korea.kr